개인정보 주요 정책 및 제도



2025.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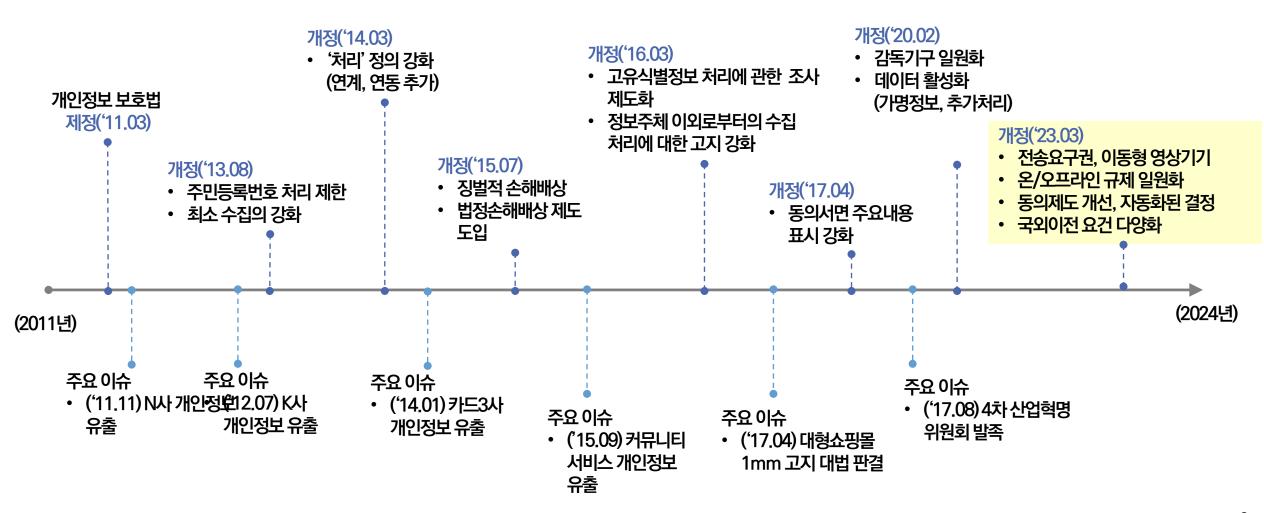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연혁



☞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란? (제2조)

〈그 자체의 식별 가능성〉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타 정보의 결합을 통한식별 가능성〉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정보가 지칭하는 대상〉

-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
-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Ex, 외국인, 피의자 정보)

〈정보가 지칭하는 대상〉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 없음
- 단, 연관성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Ex. 대표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 (c.f.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함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음

〈정보의 형태〉

- 전자, 수기 등 형태와 처리방식은 무관
- 주관적 평가 정보라도 해당될 수 있음 (Ex. 평가표, 상담결과 등)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

목차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호위원회의 구성, 업무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의 <mark>수집·이용, 제공</mark> , 수집 출처 통지, <mark>이용·제공 내역 통지</mark> ,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고정형, <mark>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처리위탁</mark>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정보 처리, 결합, 안전조치, 적용 제외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국외 이전 중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CPO/국내대리인, ISMS-P, 영향평가, 유출통지·신고, 노출 삭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권 ,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 동의철회권,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손해배상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업무, <mark>조정 신청, 사실 조사, 분쟁 조정</mark>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단체소송의 대상, 요건, 진행
제9장 보칙	적용 제외, <mark>금지행위, 사전 실태점검, 과징금</mark> , 고발 및 징계권고 , 개선권고
제10장 벌칙	형사처벌,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공포)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1차('23.9.15.) 및 2차('24.3.15.) 후속 시행령 및 고시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 완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3차)은 '25.3.13 시행

2023.9.15. 1차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정비,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 > 동의 받는 방법 및 추가적인 이용·제공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조치
-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기준, 공표명령 등

2024.3.15. 2차 시행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 손해배상의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1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필요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 곤란

-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나 기존 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음
 - *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개정내용

법 제59조 제3호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



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

평가개요

-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1,400여개 기관
- ✓ 대상기간 : 매년 1월 ~ 12월 (12개월)
- ✓ 평가지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정량지표(60점), 개인정보 보호 정책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40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가점, 유출 등 감점

✓ 평가일정 :

정량지표 자체평가 (8~9월) 정성지표 전문가평가 (11~12월)

현 (11~기

현장평가 (11~차년도 1월)

종합평가 및 결과확정 (차년도 2월~4월)

- ✓ 평가결과: 5등급 ※ S(90점이상), A(80점이상), B(70점이상), C(60점이상), D(60점미만)
- ✓ 결과환류: 정부업무평가 반영(중앙자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경영평가)

: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 표창 등 포상

: 미흡기관 기획점검 및 실태점검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제도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CPO 지정
- CPO 지정 (공공기관 외)
 - 1) 사업주 또는 대표자
 - 2)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 ✓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자 1명 지정 이 원칙
 - ✓ 다만, 특정 부문의 개인정보 특성·처리 흐름이 타 부문에 비해 특수하여 별도의 CPO 지정이 바람직할 경우 별도 지정 가능

※ 임원: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장, 부사장, 상무, 이사, 감사 등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제도

CPO 전문성 강화 [자격요건 도입]

✓ 대상: ①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 정보 처리자

②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 ③상급종합병원 ④ 공공시스템운영기관

✓ 요건: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 (개인정보보호 경력 최소 2년 필수)

	구분	경력 인정 요건	인정기간
시행령 별표 1	개인정보보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 정보보호(정보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 정보보호(정보기술)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년
		▶ 정보보호(정보기술)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6개월
고시 별표	개인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변호사 자격 취득자	1년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1년
		▶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6개월

※ 개인정보처리자 참고사항 : 개정 시행령 시행일('24.3.15) 기준 재직 중인 CPO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 부여



4 개인정보처리방침



처리방침과 실제 처리 현황간 정합성: 실제 처리 현황과 일치하도록 작성, 신규 서비스 도입·변경 시 관련 내용 반영



개인정보 동의 제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 구체화



구체성 완화: 개인정보 항목 및 제3자 유형화, 보유·이용 기간의 결정 기준 기재 방식 예외적 허용



연락처 정보 개선 :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 기재



모바일 앱 공개방식 개선 : 첫 화면 외에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 확대



법령 및 안내서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방법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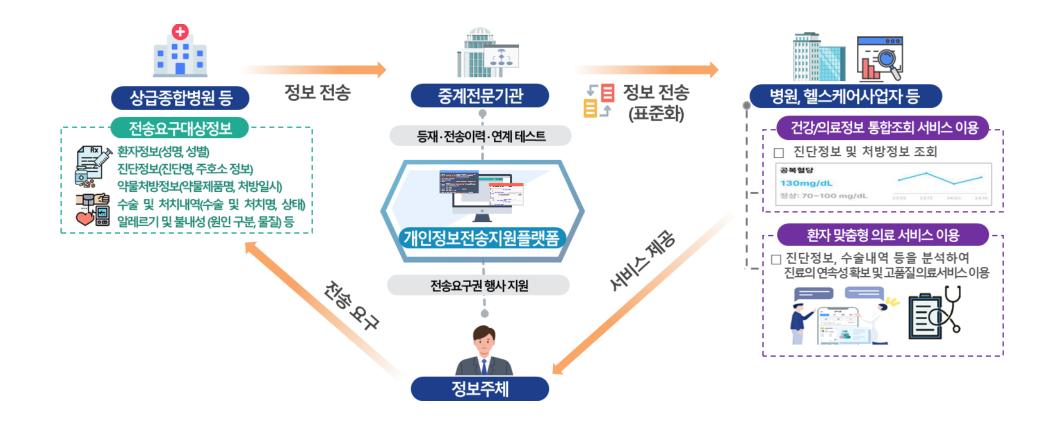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관한 사항: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등 정보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 구체화



마이데이터 개요



의료 분야 서비스 예시



- 3 - 13

마이데이터 개요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을 분야별로 구분

정보전송자 기준

- 본인전송, 제3자전송 정보전송자 일치
- 보건의료, 통신분야 규정
 - * 타 분야의 경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생활 밀접성, 공공성이 높은 에너지 분야는 26년 6월 시행

(의료) 의료정보전송자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통신) 통신정보전송자

- 「전파법」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에너지) 에너지정보전송자

-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 부 기 준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대상범위



- ❖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전송요구에 따른 전송요구 대상 정보 범위를 일치
- ❖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를추가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

보건의료전송정보

- ❖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고, 고시된 정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①「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②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③「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 · 수집된 정보
 - ④ 이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정보전송자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접종자 현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일자, 접종기관명, 접종차수, 예방접종명	전체기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건강검진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전송 요구 시점 으로부터 10년
	진료내용정보	대상자 현황,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횟수, 본인부담금, 병의원 소재지	전송요구시점 으로부터 1년
건강보험 심사평기원	투약이력정보	조제일자, 약품코드, 약품명(제품명), 성분코드, 함량, 투약량,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전송요구시점 으로부터 1년
	환자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원정보	내원 상태, 진료 구분, 내원 기간	
	진단정보	진단 임상적 상태, 진단명, 진단 및 주호소 정보, 진단 일자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약물처방 약물 처방 상태, 약물 처방 의도, 지참약 여부, 약품 제품명, 정보 약물 처방 일시, 약물 투여 방법 수술 및 처치내역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명, 수술 및 처치 일자		전송 요구 시점 으로부터 3년
	알레르기 및 불내성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구분,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물질, 알레르기 및 불내성 기록 일시, 알레르기 및 불내성 반응, 추가정보	
	영상검사, 병리검사	검사 상태, 검사구분(영상, 병리), 검사명, 검사 의뢰일, 검사 결과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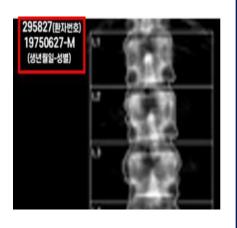
분야	비정형데이터 유형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의료	이미지, 영상, 텍스트	① 유방암 골밀도 감소 여부 진단 AI 개발		
	אוםוס	② 구강질환 진단 AI 개발		
	이미지, 영상	③ 안면골 골절 진단 Al 개발		
교통	이미지, 영상	④ 자율주행차 주행 시 비정상 상황인지 AI 개발		
	אוםוס	⑤ 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 단속 Al 개발		
대화·검색	텍스트 ⑥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 제작			
대화·교육	음성, 텍스트	⑦ 콜센터 직원 교육용 가상상담 시나리오 생성 AI 개발		

※ 위 시나리오는 실제사례를 관련 기업·기관 및 전문가와 재구성한 것으로 <u>단순 참고용!</u> 처리자 및 적정성 검토 위원회 판단에 따라 활용분야·상황에 맞게 <u>자유롭게 변용 가능!</u>



(사례1)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 진단 AI 개발

〈골밀도CT사진〉 (환자관련정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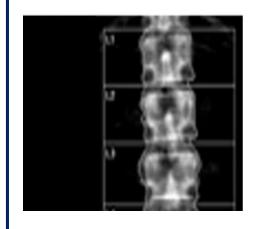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 이미지 내 표시된 환자관련정보 * 는 타 정보와 결합되어 분석될 경우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음
 - * DICOM 헤더정보(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표시
- 해당 정보는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임

데이터 처리 방안

→ 블랙마스킹 기법을 통해 환자관련정보 삭제

(블랙마스킹 처리)





(사례2) 구강질환 진단 AI 개발

〈구강 촬영사진〉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 구강사진 자체로는 개인식별 위험성 거의 없음
- 충치 영역 외 부분은 연구에 필요 없음
- 구강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이름, 나이 등)는 구강사진과 결합되어 개인식별 위험성 존재

데이터 처리 방안

- → 연구에 필요한 충치 영역은 그대로 활용하고, 그 외 영역은 블러링 처리
- ※ 블러링 수준은 현재 복원기술 발전수준 및 데이터 처리 환경(타 정보·복원기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메타데이터는 연구에 필요 없어 삭제

(충치: 그대로 활용) (그 외: 블러링 처리)





(사례3) 안면골 골절 진단 AI 개발

〈Facial CT사진〉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 CT사진 자체로는 개인식별 위험성 거의 없음
- 후두부(뇌 뒷부분) 영역은 연구에 필요 없음
- 3차원 재건 기술을 통해 입체적 복원이 가능하며, 복원시 특이한 얼굴외형, 알려진 얼굴 등 극히 일부 환자의 경우 낮은 확률로 개인식별 위험성 존재

데이터 처리 방안

- → 연구에 필요한 안면부는 그대로 활용하고, 연구에 필요 없는 후두부는 마스킹 처리
- → 마스킹을 통해 3차원 재건위험을 낮추어 활용

(안면부: 그대로 활용) (후두부: 블러링 처리)



4

합성데이터 생성 · 활용



합성데이터 관련 세부 지침



1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24.12.)

-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최초의 안내서
-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
- 합성데이터 생성에 대한 과정과 실제 검증, 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성데이터 관련 세부 지침



1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24.5.) ※ 가상으로 생성된 합성데이터 샘플



3. 혈당 측정정보 합성데이터					
측정시간	측정자나이	혈당값	측정전식사시간	직전 섭취칼로리	측정기기
오전 10시	57세	137	식사 후 8시간	0 kcal	A사 측정기기
오후 5시	52세	126	식사 후 3시간	500 kcal	B사 측정기기
오후 11시	53세	120	식사 후 5시간	680 kcal	A사 측정기기
오전 3시	61세	126	식사 후 6시간	388 kcal	A사 측정기기
오후 10시	53세	137	식사 후 4시간	90 kcal	C사 측정기기
(생성 목적) loT 헬스케어기기 정밀 보정					

5

개인정보 혁신 지원 정책



1. 규제샌드박스



공익 목적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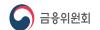
- ✓ 통신3사가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피싱 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 ✓ 법령해석 및 가명정보 활용*, 규제샌드박스 지원**
 - * 개인정보위 지원사업을 통해 국과수의 가명처리 과정(서류 준비, 기술 활용 등) 지원

** KT + 국과수 규제샌드박스 허용('24.10.)

'24.6.3.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 (성과) LG 유플러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포함한 AI 통화비서 '익시오' 출시 ('24.11.7.)
 - SKT, KT에서도 관련 서비스 출시 준비 중

2.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 AI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적정 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60일 이내 처리 원칙)

'23.1.~ 시범운영

'24.4. 운영규정 마련(개인정보위 고시) 및 본격 시행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사례(총 11건 처리, 평균 41일 소요)

'23.12.



고용부로 신고된 허위 구인광고 사업자 정보를 HR 채용 플랫폼에 공유방안



산업안전·보안 관련 정보주체 동의없는 CCTV 녹화·발췌 허용기준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의 안전한 구축방안







3.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인정보 안심구역 본격 운영

✓ 연구자·기업 등이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5개소 지정) • 폐쇄망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환경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기존

단기 활용(통상 6개월~1년)

일회성 활용 후 파기

가명처리 적정성 전수검사(비용·시간 多)

결합키 사용 제한

안심구역 도입 후

장기 활용(5년 + 연장 가능)

재사용·제3자 활용 가능

빅데이터 샘플링 검사 허용(비용·시간 절약)

결합키 다양화(결합률 향상)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현황

'23.12. 지정 / '24.3. 운영



"공적 연금의 소득분배 구조 개선 효과 분석" 등 연구과제 4건 추진 중 '23.12. 지정 / '24.7. 운영

국립암센터 🧀

"암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항암제 타겟 유전자 발굴" 등 8건 추진 중

'25. 3. 지정

'24,12, 지정

'24.12. 지정

ex

DOUZONE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alpha$

4.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 ✓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원스톱 창구 신설 ('24.8월)
- 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답변의 신속성 등을 갖춘 사업자 친화적 지원창구 마련 ('25.3월 기준 17건 신청, 14건 처리 완료)
- 소극적 답변 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실질적 대안 제시 (5일 이내 1차 답변 원칙)
 - ❖ (사례) AI 기반 취약자 지원 사업을 기획한 스타트업에서 법적 쟁점에 관한 문의 접수
 - → 신속한 법령해석 제공으로 신규 서비스 상품 출시 지원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선례·해석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기존 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명정보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보·활용, 데이터 확보 시간·비용 절감



감사합니다